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

습기로운 보육활동 보호생활

2편: 무고 / 상해와 폭행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



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고

개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156조(무고)

● 무고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nput type="checkbox"/>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input type="checkbox"/>
허위 사실(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input type="checkbox"/>
관할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시

- 아이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행한 사실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보육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아이를 혼내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CCTV를 통해 보호자와 교사가 함께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집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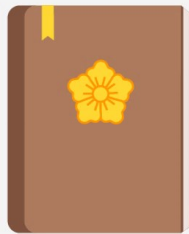
현장사례

"외국인 자녀와 한국인 자녀 둘이 다투는 상황에서 제가 외국인 부모에게 통역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외국 아이 편을 든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내용에는 제가 하지도 않은 '고함지르기나 아이 등을 꼬집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있었어요. 그로 인해 저는 교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원장님도 스트레스에 시달려 건강상태가 나빠졌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판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만4세인 자녀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녀를 선생님이 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함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교사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교사에게 발생하는 낙인효과까지
고려하여 부모에게 무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692판결]



참고: 무고죄 판단기준 관련

무고죄 판단 기준

- 신고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 내용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 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6.9.28.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신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무고죄 성립되지 않음
(대법원 2004.1.27.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해와 폭행**

개념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 법적근거 :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260조(폭행)

● **상해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몸에 상처를 입거나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 **폭행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직접적인 유형력(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행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 폭행은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적 행동이 있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예: 손으로 밀치기, 물건을 던지기, 위협적으로 다가가기 등)



예시

- 보호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하여 보육교사와 상담 중에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아동학대를 의심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난입하여 보육교사의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교사에게 유·무형, 직·간접 수단을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 등)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현장사례

"재원생 중 발달 지연 및 ADHD 증상이 의심되어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관련 정보 및 지원 사항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는 아이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안내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을 했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판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전화 통화와 같은 비접촉적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692판결]



참고: 상해와 폭행 관련

「형법」에 따른 상해·폭행죄 처벌

- 「형법」 제257조(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불안감 조성)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폭행죄 판단기준

-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목적·정도·정황,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의 유무와 수준, 행위자의 의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상해 인정 기준

- **정신적 건강 훼손도 포함**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건강 훼손 또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 장애에는 육체적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도 포함되므로 정신 건강의 훼손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도 상해가 될 수 있음

- **일시적 불안·스트레스 미포함**

일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가해행위에 대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그 자체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음

- **의학적 소견 필요**

신체의 건강 훼손, 사람의 생리적 기능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서를 주요 근거로 삼아 이루어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해사고 보상 범위

• 보육교직원 상해 담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공제에 가입한 경우,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90%를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육활동 중 영유아의 피해를 주장하며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되어 이에 따른 정신적 치료 및 심리상담을 기소 전 100만원, 기소 후 200만원, 1회당 10만원 한도에서 보상

